

主題發表 및 討論者 發表內容

〈主題發表〉

日本 個人年金保險의 現狀과 向後의 課題

秋元俊雄 (아끼모토 도시오)
(日本 明治生命 業務開發部長)

〈討論者發表〉

個人年金制度 導入案에 대한 考察

金 基 洪 博士
(租稅研究院專門研究委員)

適格個人年金保險商品の 導入方向

李 鳳 周 博士
(保險開發院研究委員)

〈主題發表〉

日本 個人年金保險의 現狀과 向後의 課題

講師：秋元俊雄 (아끼모토 도시오)

(日本 明治生命 業務開發部長)

日本 個人年金保險의 現狀과 向後の 課題

1. 序論

가. 人口構造의 變化 (資料 1 :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 2005년에는 세계제일의 高齡國이 됨
 - 日本은 2005년에 65세이상 人口의 比率이 19%이상인 되어,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제일의 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全體人口의 1/4을 차지
 -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65세이상의 인구가 1,482만명에서 3,064만명으로 2배이상 증가하여, 2015년에는 인구 4명당 1명이 65세이상인 것으로 예상됨.

나. 높은 개인연금의 니드

- 후생연금의 年金開始年齡 등의 變更의 움직임
 - 현재 60세인 年金開始年齡을 65세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平均壽命의 신장
 - 1992년에는 일본의 平均壽命이 男子 76.09세, 女子 82.22세이지만,

2015년에는 男子 78세, 女子 85세로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

- 노후의 生活資金은 「自立型」의식이 強함(1991년 정부 총무청 조사 :
자립형 : 44%, 사회보장형 : 38%, 가족형 : 16%)
 - 核家族化의 진전으로 老後의 生活資金은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自立型 意識이 강해지고 있음
- 개인연금의 普及率은 아직 低水準임
 - 1991년 개인연금의 世帶加入率은 28.5%인데, 이 중 生命보험(간보,
공제 포함) 가입율이 22.9%로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에는 生命보험의 개인연금 세대가입율은 40%에 이르고 있음

2. 연금의 體系

가. 사회보장의 補完機能으로서의 私的年金(資料 2 : 노후보장의 體系)

- 생활의 基礎部分은 後生연금 등 社會保障으로 충당
- 기초부분을 超過하는 부분은 기업연금 등 企業保障으로 충당
-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부분은 개인연금 등 個人保障으로 충당

나. 充實한 노후보장 대비에 貢獻하는 生命보험업계

- 生命보험회사가 모집·판매하고 있는 부분
 - 공적연금의 일부 대행(後生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의 모집판매)
 - 자영업자 등의 제 1호 피보험자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
령기초연금밖에 없어 노후연금액이 매우 불충분하므로 가산연금

부분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 형성되어 있음

- 기업연금(적격퇴직연금) 판매
- 개인연금 및 근로자재산형성제도에 의한 재형연금 판매

3. 개인연금보험

가. 개인연금보험 開發의 推移(資料 3 : 明治生命의 개인연금보험 開發, 資料 4 : 明治生命·業界의 개인연금보험 판매고 推移)

- 1960년 本格的 개인연금을 發賣
 - 1960년에 판매한 종신연금보험은 1보험기간중의 보장을 연금연액의 30배로 설계한 보장성 종신연금보험
 - 1963년에는 保障部分을 연금연액의 30배에서 100배로 증가시켜 개량한 보장부 종신연금보험
 - 1960년대에는 실제로는 연간 9백건의 販賣實績밖에 없고 연금에 대한 니드는 크지 않았음
- 1973. 8 - 1979. 5월 개인연금보험 販賣 中止
 - 판매중지된 이유는 당시 인플레이 시대였으므로 장기적으로 연금을 위하여 積立한다는 長期貯蓄의 니드가 사라졌기 때문
 - 70년대는 高額保障의 時代
- 1979년 개인연금보험 再販賣
 - 背景으로서는 物價의 安定, 企業年金導入의 進展, 사회보장의 장래 年金裁定의 逼迫 우려
 - 당시는 개인연금의 니드도 증가하여 신계약건수도 79년 54,000건,

80년 80,000건으로 販賣實積도 증가

- 1984년 個人年金保險料 稅制適格制度 도입에 따른 販賣 本格化 및 개인연금보험의 商品 種類 擴大
 - 신계약건수도 84년 59,000건에서 87년 95,000건으로 증가
 - 세계적격상품에 대해서는 別途의 상품을 開發하지 않고 既存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對應
- 1990년 個人年金保險料 所得控除額 引上
 - 소득공제액 인상에 따라 신계약 건수도 89년 125,000건에서 90년 229,000건으로 倍增
- 1980년대에 들어서 銀行, 信託등 타금융기관이 개인연금시장에 진출
 - 현재까지 他金融機關에는 個人年金稅制適格惠澤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1981년 9월 簡易保險(우리나라의 체신보험에 해당)이 종전의 郵便年金을 개정하여 個人年金을 판매
 - 그 후 간이보험에 대한 對抗商品으로서 生保各社は 新種個人年金을 發賣

나. 明治生命의 개인연금보험 商品 (資料 5 : 明治生命의 개인연금 보험 種類)

- 확정연금(5·10·15년 확정, 65세만료 확정)
 - 연금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기간중에 매년의 연금지급일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연금을 지급함.
 - 기간중에 사망한 경우는 미지급기간의 연금현가 또는 미지급기간

의 연금을 지급함

- 종신연금 (10년보증기간부 정액형·체증형)
 - 보증기간중에 사망한 경우는 보증기간중의 미지급연금현가를 지급함.
 - 종신연금에는 정액형과 체증형 두가지가 있는데 정액형은 기본연금이 동일하며 체증형은 명치생명의 경우 보증기간 경과후 5년마다 기본연금액 50%씩 증가함
- 부부연금
 - 부부연금은 10년 보증부부연생보험으로, 부부중 한사람이 생존하는 한 연금을 지급함
 - 보증기간중 부부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보증기간중의 미지급연금 현가를 지급함
- 개호보장부연금
 - 소정의 요개호상태에 해당할 때 특약기본연금에 개호 할증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 부부개호보장부연금
 - 부부중 한사람이 요개호상태에 해당할 때 특약기본연금에 개호할증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 보험료납입기간 중의 보장 (사망급부금, 보험료 納入免除)
 - 보험료 납입기간중의 보장에는 사망급부금과 보험료 납입면제가 있는데, 사망급부금은 기본연금원자에 대한 납입기간의 경과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중에 1급장해, 또는 재해에 의해 2 - 3급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보험료납입을 면제함
- 개인연금보험계약의 取扱規定 (資料 6 : 明治生命의 個人年金 取扱規定)
(參考 : 他社에서 판매하는 「有期年金」의 개요 資料7 : S社の「10년有期年金」의 概要)

다. 개인연금보험의 基礎率

- 예정사망률

- 年金開始前에는 일반보험에 준하여 제5회 전회사표 (1984 - 85년 경험표)를 사용하고, 年金開始後는 年金用死亡率을 사용함
- 연금개시후에는 사망율이 낮아지면 연금지급이 증가하므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망율을 사용해야 함.
- 후생성 제10회 생명표(1955년)와 제15회 생명표(1980년)에 대한 25년간의 연평균개선율을 장래에도 같은 비율로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사망표를 작성하여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사망율로 사용함
- 연금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연금개시기간의 사망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금상품개발의 중요한 요소가 됨.

- 예정이율

- 1993년의 경우 일반보험과 같이 4.75%의 예정이율을 사용하고 있음 . 1985 - 1988년의 경우 보험기간 10년이하는 6.25%, 10년초과 20년이하는 6.0%, 20년초과는 5.5%이었고 1990 - 1991년은 보험기간 10년이하 5.75%, 10년초과는 5.5%이었으며 1994년 4월부터는 3.75%의 예정이율을 사용할 예정임.

- 예정사업비율

- 年金開始前에는 일반보험에 준하여 신계약비, 유지비, 집금비를 계상하고 年金開始後에는 基本年金年額의 1%를 사용함.
- α 는 연금원자 $\times 0.21$, β 는 보험료 $\times 7\%$ (직단월납의 경우), γ 는 연금원자 $\times 0.0017$

라. 配當의 支給方法 (明治生命의 例·資料 8 : 增額年金과 增加年金의 例)

1) 연금개시일 以前의 配當

- 적립배당

- 매년의 배당을 그 당시의 적립배당율을 이용하여 매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연금개시전에 증액연금의 매중에 충당함
- 연금개시일 이전에 一時金으로 수령할 수 있음. 단 稅制適格契約은 除外

2) 연금개시일 以後의 配當

- 다음 방법중에서 選擇할 수 있음

- 增加年金의 買増에 相當하는 방법
- 每年 연금과 함께 受取하는 방법
- 소정의 이율을 부리하여 積立(단, 稅制適格契約은 除外)하는 방법

4. 稅制適格契約

가. 生命保險料 控除 (資料 9 : 生命保險料 控除額)

- 1924년에 창설 : 課稅所得의 계산시에 個人의 所得으로부터 控除

- 생명보험료 공제는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창설

- 전후 일시 폐지되었으나 1951년에 부활되어 그후 9회에 걸쳐 개정되어 1974년에 현재의 소득공제액으로 개정
- 생명보험료의 공제금액은 자료 9에 기재되어 있음
- 1974년에 現在の 所得控除額으로 改正
- 생명보험료 공제의 대상은 生命保險·簡易生命保險·JA(농협) 등 共濟의 생명보험계약과 개인연금보험계약(단, 보험기간 5년 미만의 生存保險은 除外)임.
- 契約形態는 本人 또는 그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을 保險金 또는 一時金의 受取人으로 하는 契約
- 純納入保險料는 年間の 納入保險料에서 配當金을 공제한 금액

나. 個人年金保險料 控除(資料 10 : 個人年金保險料 控除의 適格要件)

- 1984년 生命保險料 控除와는 別途로 個人年金保險料 控除制度 창설 (5,000円한도)
- 개인연금보험료 공제는 생명보험료 공제의 일부로서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1984년에 별도로 창설되었음
- 1984년에 개인연금보험이 창설된 이유
 - ① 생명보험 업계의 생명보험료 공제의 증액 요구
 - ② 장래 사회보장재정의 압박 문제
- 1990년 생명보험료공제와 同額으로 공제한도 확대
- 개인연금보험료 공제의 적격요건은 자료 10을 참고

다. 稅制適格契約의 販賣와 商品運用

- 영업직원에 의한 판매
 - 다른 개인보험상품과 동일한 판매채널을 사용함
- 설계서, 상품 팸플릿 등으로 個人年金 稅制適格契約을 설명함
- 계약가입시에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으로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稅制適格特約」을 부가함
- 개인연금보험료 공제의 申告用으로서 매년 「生命保險料 控除證明書 <개인연금용>」를 본사에서 계약자에게 送付(일반 「生命保險料 控除證明書」와 동일한 취급)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생명보험료 공제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매년 生命保險料 控除證明書を 생명보험회사 본사에서 계약자에게 송부함
- 세제적격특약을 부가한 계약의 내용 變更에는 制限이 있음.
 - 制限內容
 - ① 계약후 10년이내에는 납제연금으로 변경할 수 없음
 - ② 연금수취인을 변경할 수 없음
 - ③ 적립배당은 인출할 수 없음
 - 세제적격특약이 소멸하는 경우
 - ① 사망이나 해약 등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 ② 계약자가 변경되어 계약자나 배우자가 연금수취인이 되지 않았을 때 다같이 세제적격요건을 일탈했을 경우

5. 他金融機關 연금형 상품의 概要

가. 簡易保險(郵政省)

- 適格要件을 충족하면 개인연금보험료 控除의 대상이 됨
- 간이보험상품은 생명보험, JA공제의 상품내용과 거의 동일함
- 종신연금보험, 정기연금보험, 부부종신연금보험
 - 종신연금보험 체증형은 매년 3% 복리로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연금연액은 18만 - 90만円で 소액에 한정
- 간이보험은 1992년도에 판매건수가 72만건으로 생명보험 250만건의 약 1/3정도 수준임
- 1건당 평균연금연액은 민간생명보험이 약 70만円인데 반해 간이보험은 약 30만円임.
- 판매특징으로서 주로 50 - 60대의 고령가입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납입기간이 짧고 최저연금연액이 소액(소액이라도 고령자라서 보험료는 비싸다)이어서 고령자가 가입하기 쉬운 여건이기 때문
- 현재 세제적격대상이 되고 있는 계약은 간이보험계약의 20% 정도임
 - 고령자 계약이 많고 납입기간이 짧은 계약이 많아서 세제적격대상 계약은 적음

나. JA(농협)共濟 등

- 適格要件을 충족하면 개인연금보험료 控除의 대상이 됨
- JA공제는 생명보험, 간이보험의 상품내용과 거의 동일함

- 종신연금공제, 정기연금공제, 부부종신연금공제
- 연금연액 12만 - 600만円(JA공제의 경우)

다. 銀行

- 연금형예금
 - 정기예금의 운용에 의한 적립과 이자부분의 연금식 지급
- 國債定期口座(연금형)
 - 국채에 투자하여 국채이자를 期日指定 定期預金으로 운용
- 연금형 적립정기예금
 - 적립정기예금으로 적립한 積立元利金を 연금지급일을 만기일로 하는 각각의 期日指定預金에 분할
- 개인연금 세제적격혜택은 없음
 - 은행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20%의 분리과세 대상

라. 信託銀行

- 1991년 業界 共通商品인 「개인연금신탁(상호부조형)마이루트」을 發賣
 - 개인연금신탁(상호부조형)은 예정이율과 일부 예정사망율(최후의 1년간의 비부중기간에만 적용)을 도입한 플랜으로, 예정이율은 4.5%임
 - 가입대상은 50세 이상
 - 급부기간은 5 - 10년(최후의 1년은 비보중기간)
 - 실제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음
- . 그 이유로서는 신탁은행에 있어서 4.5%라는 예정이율은 높은 금

리수준이므로 역마진 우려, 이자부분의 20% 분리과세, 세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

- 이외에 國債, 金錢信託을 중심으로 운용하여 元利金을 年金支給하는
플랜도 있음.
- 개인연금세제적격혜택은 없음

마. 證券會社

- 國債와 公社債投信을 조합한 연금지급플랜
 - 저축과 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연금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함
- 개인연금세제적격 혜택은 없음
 - 이자부분은 20% 분리과세의 대상

바. 損害保險會社

- 1992년 業界 共通商品인 「年金支給形 積立傷害保險」을 發賣
- 생명보험의 개인연금을 의식한 상품으로, 생명보험의 개인연금과 상
당히 유사함
- 현재의 보유건수는 100만건 정도로 추정
- 年金支給 積立傷害保險의 特徵은 다음과 같음.
 - 가입에서 급부금 수취만료시까지가 상해사고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의 보험기간
 - 급부금 수취기간
확정형 …… 5, 10, 15, 20년

보증기간부 유기형 10년보증 15년, 15년보증 20년

○ 損害保險料 控除의 對象

손해보험의 경우는 손해보험료 공제의 대상으로, 연간 15,000엔까지
소득공제가 됨

- 개인연금 세제혜택은 없음

6. 個人年金保險의 向後 課題

가. 商品設計上의 課題

- 예정이율의 문제

- 개인연금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운용환경이 장래에 변화했을 때 예정이율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이차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정이율 5.5%의 계약에 대해서 총자산운용수익을 4%전후의 운용 상황임
- 따라서 개인연금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고정예정이율로 할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부여하여 高料率, 高配當의 상품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함.

- 예정사망율의 문제

- 장래적으로 보면 사망율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생존율을 어느 정도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

- 보험료 납입기간중의 상품매력도 향상

- 개인연금보험은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적자상품이므로 계약유지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계약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력있는 특약을 부가할 필요가 있음
- 연금지급기간중의 상품매력도 향상
 - 또한 연금지급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후 일본에서는 토탈 식 요소를 가미할 것으로 생각됨

나. 販賣上의 課題

- 올바른 판매를 위하여 영업직원에게 올바른 세무지식(증여세문제 등) 교육이 필요
- 개인연금보험은 장기계약이므로 영업직원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필요
 - 특히 장래배당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판매시에 확인해야 함
- 계약유지율의 향상
 - 개인연금보험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모집수당을 초년도에만 지급하지 않고, 2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 개인연금보험은 계약의 계속적인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영업직원에게 철저히 교육
 - 개인보험의 유지율은 13회차가 87.3%, 25회차가 77.8%이고 개인 연금보험의 유지율은 13회차가 86.7%, 25회차가 80.4%로 그다지 차이가 없음

다. 事務體制上의 課題

- 장래의 연금지급 사무 코스트를 고려한 예정유지비, 지급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분리(특별)계정

1. 導入의 背景과 推移

- 1985년 보험심의회 답신
- 1986년 10월 개인변액보험발매에 따른 특별계정의 설치
- 1988년 6월 연금복지사업단보험에 특별계정을 도입
- 1990년 4월 후생연금기금보험에 특별계정을 도입
- 1990년 7월 신기업연금보험에 특별계정을 도입

2. 對象 商品

가. 個人變額保險(參考 1 : 개인변액보험의 構造)

- 종신행, 유기형
- 運用實績에 따라 사망·고도장해보험금, 계약환급금 등이變動
- 단, 사망·고도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기본보험금액을保證

나. 變額企業年金保險

1) 변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

- 1987년에 公的年金의 자주운용을 목적으로 年金福祉事業團보험이 개시
- 1988년에 特別計定으로 운용하는 변액연금복지사업단보험을 창설 (적립금을 일반계정과 分離하여 관리)

2) 厚生年金基金保險 特別計定特約

- 1990년 運用機關의 擴大 등에 따라 제1특약, 제2특약을 창설
- 제1특약은 企業年金 全體의 合同運用特別計定으로 운용
- 제2특약은 個別 契約마다 설정되는 單獨運用特別計定으로 운용

3) 新企業年金保險 特別計定特約

- 신기업연금보험에 부가하는 前述(2)의 제1특약으로서 합동운용

3. 分離計定の 評價 등 (参考 2 : 개인변액보험의 자산·보유계약고)

가. 運用規制

- 특별계정마다 규정

나. 資産評價

- 개인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상장주식을 시가평가, 기타자산은 원가법으로 평가
- 기업연금의 특별계정은 상장주식을 저가법, 기타자산을 원가법으로 평가

다. 事業費·死亡保障

- 예정사업비부분 및 보험리스크의 보장부분은 정액보험과 合算하여 일반계정에서 관리

라. 配當

- 사차익·비차익의 배당은 變動保險金額 계산에 산입

4. Discl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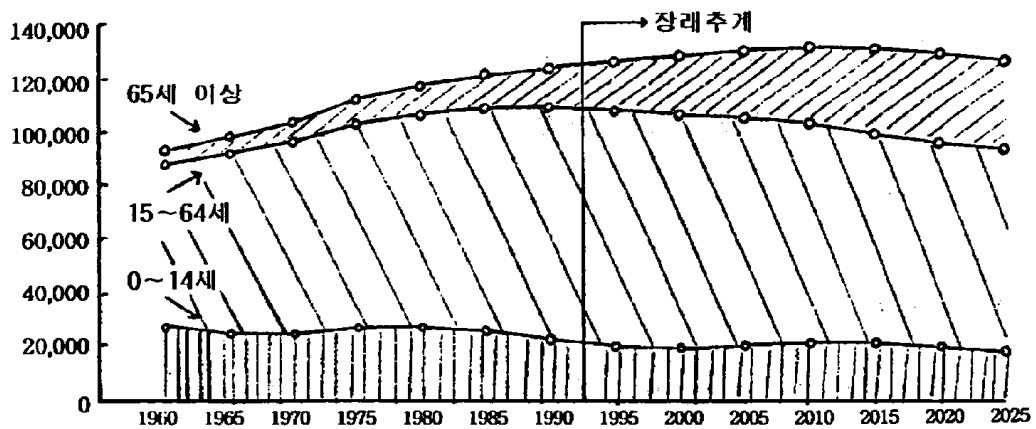
가. Disclosure 방법(参考 3 : 현행의 Disclosure 방법)

나. 向後の 課題

<資料 1> 일본의 人口構造의 變化

3구분연령의 人口의 추이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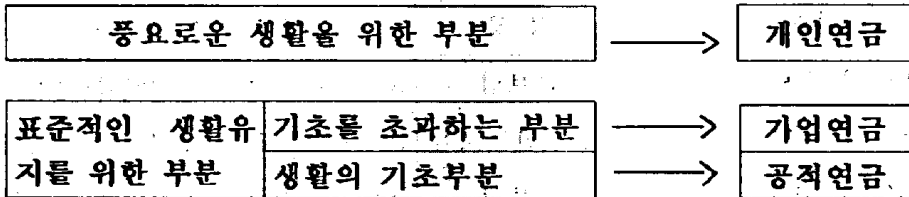


인구 3구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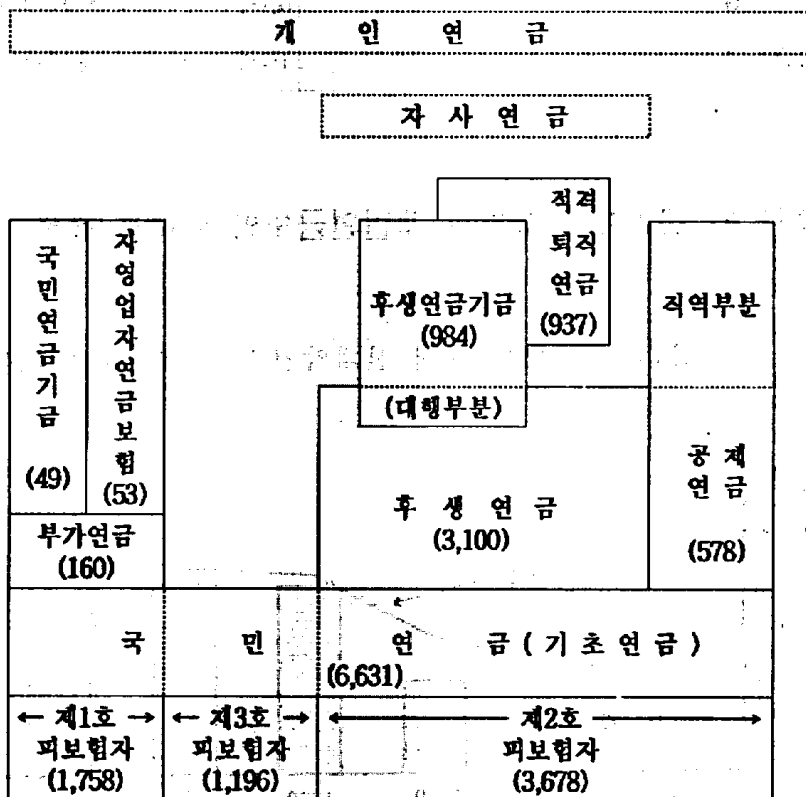
(단위 :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14세	30.0	25.6	23.0	24.3	23.5	21.5	18.2	16.0	15.2	15.6	16.4	16.3	15.5	14.5
15~64세	64.2	68.1	69.0	67.7	67.3	68.2	69.5	69.4	67.8	65.2	62.4	59.5	59.0	59.7
65세~	5.7	6.3	7.1	7.9	9.1	10.3	12.0	14.5	17.0	19.1	21.3	24.1	25.5	25.8

<資料 2> 노후보장의 體系



<참고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주) 괄호안은 1991년 4월말 현재의 적용자수(단위 : 만명).
또한, 국민연금기금 가입자수는 1992년 6월말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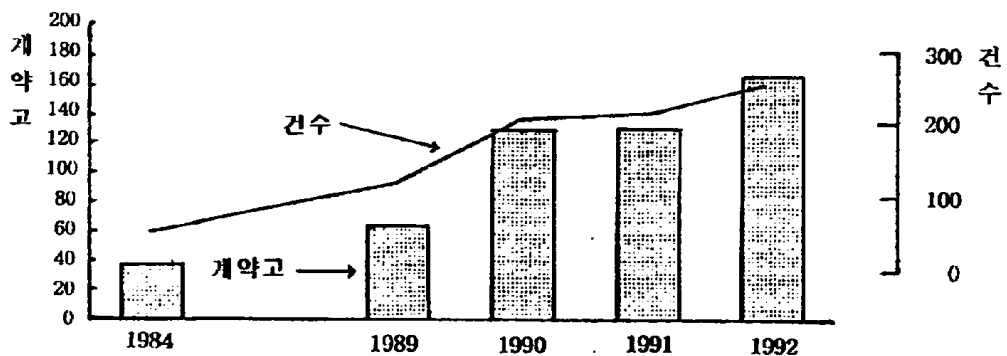
<資料 3> 明治生命의 개인연금보험의 開發

판매기간	정 식 명 칭	연금의 종류(형태)
1960. 3~1963. 3	종신연금보험	10년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
1963. 4~1973. 7	보장부 종신연금보험	10년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
1979. 6~1984. 5	개인연금보험	10년보증기간부 종신연금(채증형)
1984. 6~	개인연금보험	10년보증기간부 종신연금(채증형) 10년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 10년 확정연금(정액형)
1986. 9~		65세만료 확정연금(정액형)
1990. 4~		15세 확정연금(정액형)

<資料 4> 明治生命·業界의 개인연금보험 販賣高 推移

<그림1> 개인연금보험 신계약건수, 신계약고(明治生命)

(단위 : 千件, 백억円)



(주) 금액은 연금개시시에 있어서의 年金原資를 나타낸다. 이하 동일

<그림2> 개인연금보험 신계약건수, 신계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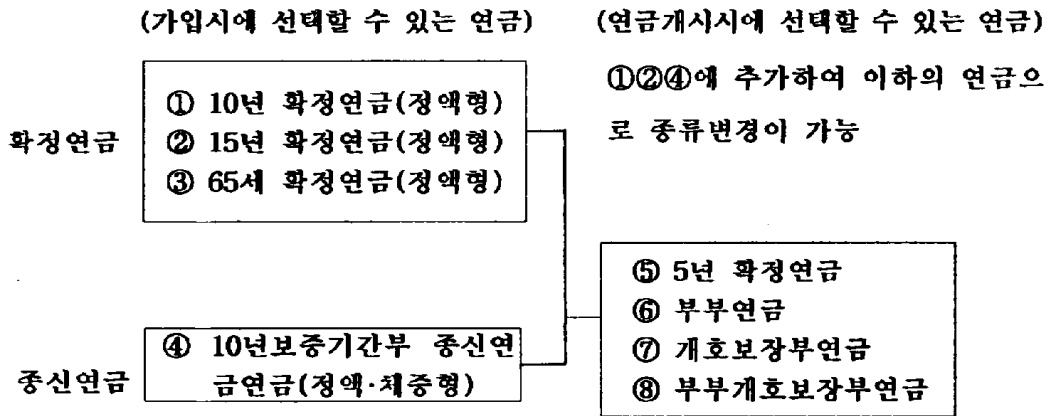
구 분		1984	1989	1990	1991	1992
全社	신계약건수(천件)	513	1,516	2,110	2,284	2,591
	신계약고(백억円)	258	896	1,273	1,466	1,671
明治	신계약건수(천件)	56	114	205	216	252
	신계약고(백억円)	38	63	129	130	167

<그림3> 개인연금보험 보유계약건수 및 보유계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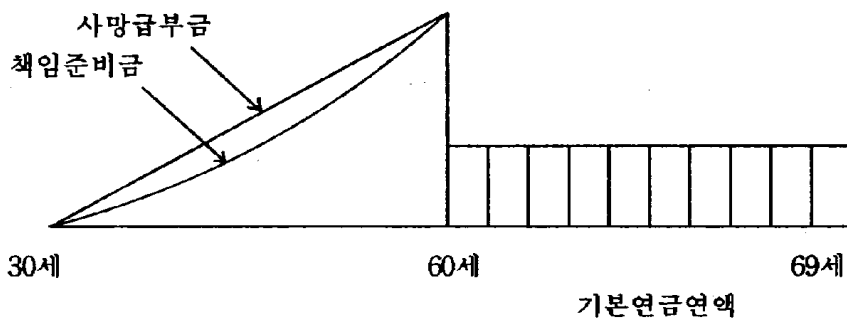
구 분		1985.3	1990.3	1991.3	1992.3	1993.3
全社	보유건수(천件)	1,761	5,615	7,302	8,978	10,736
	보유계약고(백억円)	807	3,060	4,122	5,250	6,464
明治	보유건수(천件)	190	503	688	872	1,060
	보유계약고(백억円)	161	308	431	548	682

<資料 5> 明治生命의 개인연금보험의 種類

가. 개인연금의 種類·形態 등



<구조도 예시> 10년 확정연금의 경우



- ① 60세 이후는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10년간 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개시후는 미지급연금의 일괄수취도 가능하다.

나. 보험료 納入方法에 의한 연금종류의 分類

- 1) 一時納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 10년보증기간부 종신연금(정액형·체증형)
- 2) 平準納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 10·15년 확정연금, 65세 만료확정연금, 10년 보증기간부종신연금(정액형·체증형)

<資料 6> 明治生命의 개인연금 取扱規定

가. 연금개시연령 및 가입연령범위

1) 평준납(월납, 6개월납, 연납)

① 10·15년 확정연금

연금개시연령	가입연령범위
55세	20 - 45세
60세	20 - 50세
65세	30 - 55세
70세	35 - 60세

② 65세 확정연금

연금개시연령	가입연령범위
56세	30 - 46세
57세	30 - 47세
58세	30 - 48세
59세	30 - 49세
60세	30 - 50세

③ 종신연금

연금개시연령	가입연령범위
55세	20 - 50세
60세	20 - 55세
65세	30 - 60세
70세	35 - 65세

2) 일시납

연금개시연령	가입연령범위
55 - 75세 (각연령마다 연금개시)	연금개시연령의 10년전부터 1년전까지

나. 基本年金 年額의 범위 (基本年金 年額은 基本年金 年額의 범위에서 決定한다)

30 - 3,000만円(최저기본연금연액은 연금종류에 따라 다름)

다. 부가할 수 있는 특약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은 基本年金 年額의 범위에서 決定한다)

① (일시납) 연금매증특약 (일시납 年金 매증특약)

② 정기보험특약 (정기보험특약)

③ 생존급부금부 정기보험특약 (생존급부금부 정기보험특약)

④ 입원보장특약(A)·(B)·(C) (입원보장특약(A)·(B)·(C))

⑤ 수술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

⑥ 여성의료특약 (여성의료특약)

⑦ 간호급부특약 (간호급부특약)

⑧ 퇴원급부특약 (퇴원급부특약)

⑨ 상해특약 (상해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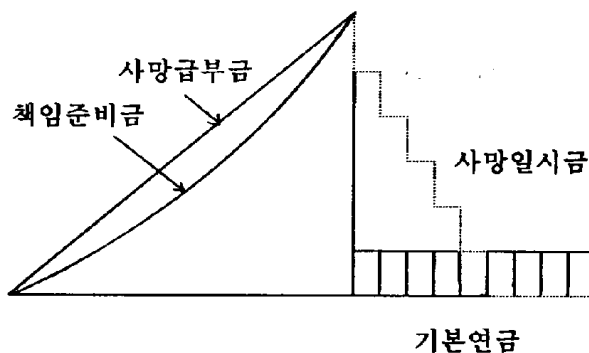
⑩ 치과치료특약(A)·(B) (치과치료특약(A)·(B))

<資料 7> S社の「10年 有期年金」の概要

< 개요 >

- 연금지급기간(10년)중,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한 연금을 지급
- 연금지급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연금지급개시일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유기연금은 연금개시일 이후에 톤틴성을 부여한 연금이라 할 수 있다<확정연금(톤틴성 없음)은 미지급연금의 현가를 지급>.).
- 연금개시일 이후에는 해약할 수 없다(확정연금은 미지급연금의 일괄수취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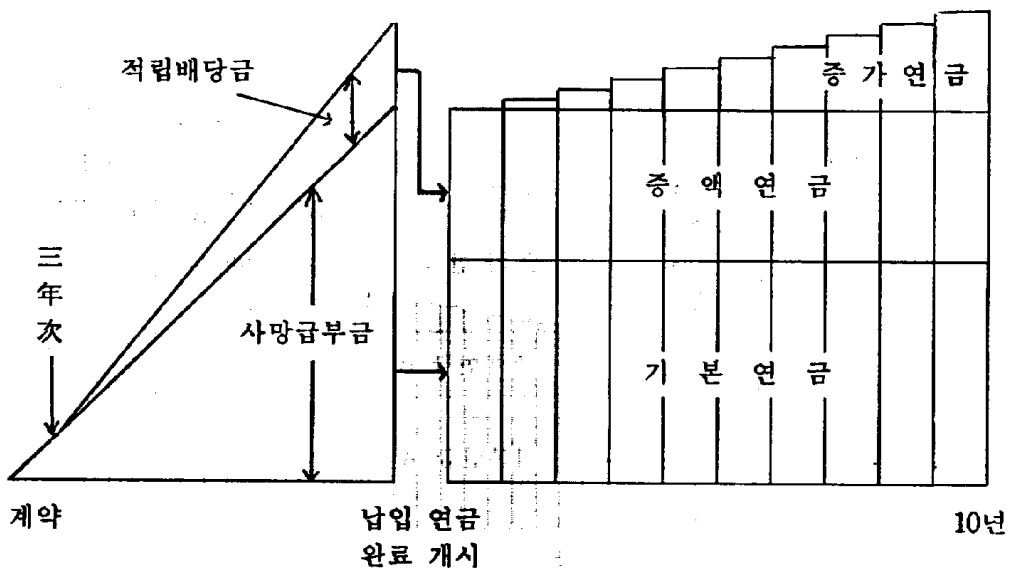
<구조도 例示>



<資料 8> 増額年金과 増加年金의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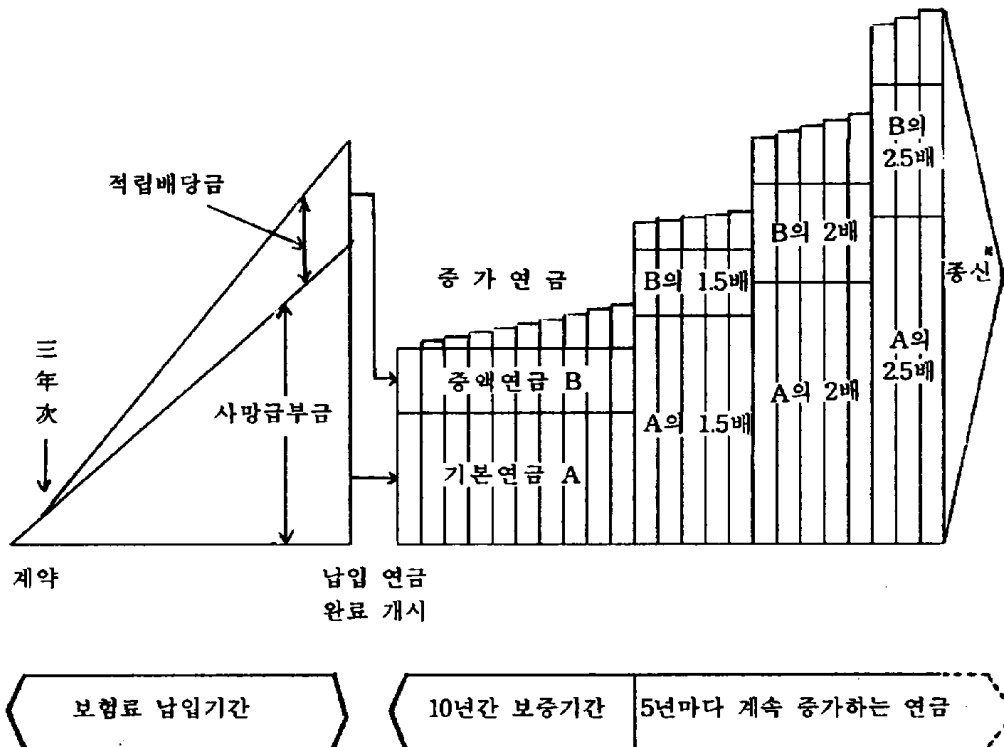
<10년 확정연금 정액형>

연금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기간중 (10년간) 피보험자가 生存해 있는 동안 定額의 年金을 지급한다.



<10년 보증부종신연금 체증형>

- 1) 연금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한 소정의 연금을平生支給한다.
- 2) 최초 10년간의 연금연액은 기본연금액과 同額이고, 그 後는 5년마다 基本年金年額의 50%씩 増額된다.



* 증신에 걸쳐 5년마다 증가

<資料 9> 生命保険料 控除額

가. 所得稅의 生命保險料 控除額

순납입보험료의 금액	공제금액
25,000円 이하	전액
25,000 초과 ~ 50,000円 이하	순납입보험료 * 1/2 + 12,500円
50,000 초과 ~ 100,000円 이하	순납입보험료 * 1/4 + 25,000円
100,000円 초과	일률적으로 50,000円

나. 地方稅의 生命保險料 控除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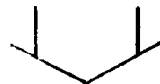
순납입보험료의 금액	공제금액
15,000円 이하	전액
15,000초과 ~ 40,000円 이하	순납입보험료 * 1/2 + 7,500円
40,000초과 ~ 70,000円 이하	순납입보험료 * 1/4 + 17,500円
70,000円 초과	일률적으로 35,000円

<資料 10> 個人年金保險料 控除의 適格要件

< 1984년 創設>

소득 공제액	주요 적격요건
소득세 5,000円까지	<契約形態> ① 연금수취인은 피보험자와 同一人일 것 ② 연금수취인은 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일 것 ③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定期的으로 납입될 것 ④ 연금의 지급은 終身 또는 수취인이 60세에 달했을 때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⑤ 의료보장특약, 정기보험특약 등은 부가할 수 없음
주민세 3,500円까지	<給付內容> ⑥ 中途死亡이나 重度障害를 제외하고 金錢의 지급은 年金給付로만 이루어질 것 ⑦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중도장해시 급부는 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액 총액에 따라 均衡적으로 설계될 것 ⑧ 잉여금의 금전에 의한 分配는 연금지급 개시일 前에 하지 않을 것

<1990년 改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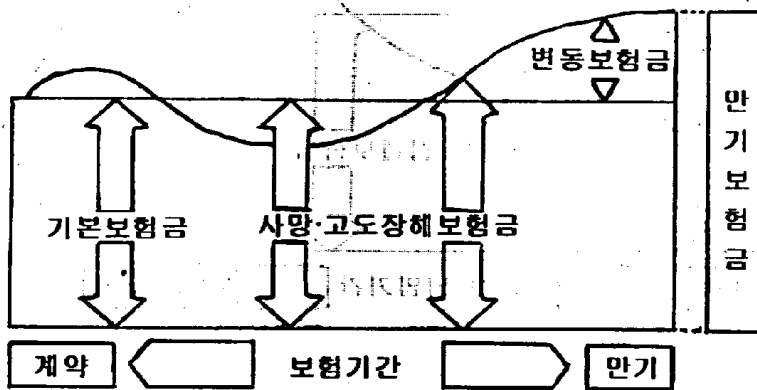


소득 공제액	주요 적격요건
소득세 50,000円까지 주민세 35,000円까지	① - ④ 변함 없음 ⑤ 의료보장특약, 정기보험특약 등 부가할 수 있음 (단, 이 特約保險料 부분은 일반 생명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됨) ⑥ - ⑧ 변함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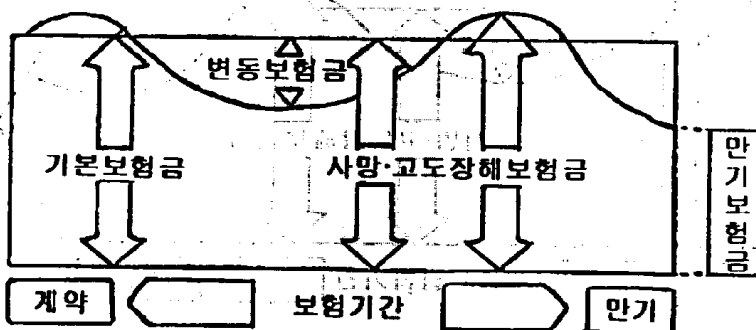
<参考 1> 個人變額保險의 構造

<有期型의 例>

<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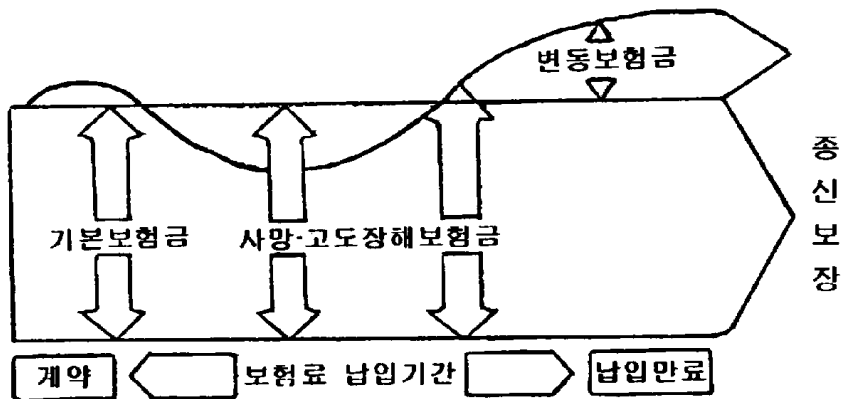
<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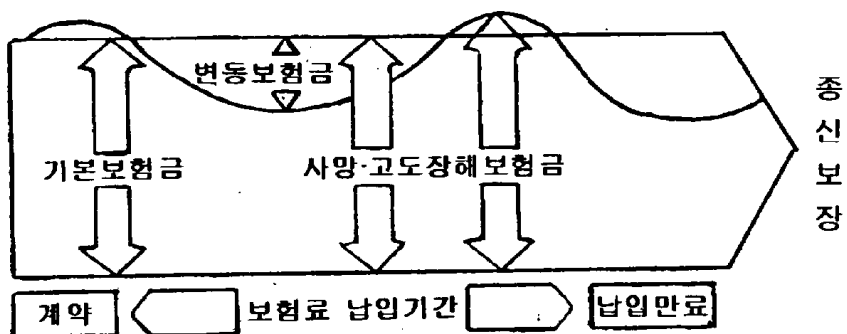
* 보험금액은 변동(증감)함.

<終身型の例>

<예 1>



<예 2>



* 보험금액은 변동(증감)함.

<参考 2> 個人變額保險의 資産 및 保有契約高

1. 特別計定資産의 內譯

(단위:백만円,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현예금·콜론	43,001	17.4
주 식	82,856	33.5
공 사 채	61,456	24.8
외 국 주 식	11,897	4.8
외 국 공 사 채	31,745	12.8
대 출 금	0	0.0
기 타	16,409	6.6
합 계	247,366	100.0

2. 保有契約高

(단위 : 건, 백만円)

구 분	건 수	금 액
변액보험(유기형)	14,440	45,642
변액보험(종신형)	95,672	1,346,081
합 계	110,112	1,391.723

(주) 보유계약고에는 정기보험특약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參考 3> 現行의 Disclosure 方法

1. 個人變額保險의 特別計定

① 계약내용(연 1회, 계약응당일에 우송)

「다이나믹보험 계약내용의 안내」

② 결산내용(연 1회, 사업년도말에 우송)

「××년도 「다이나믹보험」(개인변액보험 특별계정)결산안내」

③ 운용상황, 자산구성, 운용실적 등(매월말 및 연도말에 지사·영업소에 비치)

「××년 ××월 「다이나믹보험」(개인변액보험 특별계정)의 현황」

「××년도 「다이나믹보험」(개인변액보험 특별계정)의 현황」

2. 企業年金

① 운용상황

- 科目別 殘高·時價, 과목별 손익, 각종 잔고 가공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매분기마다 공시

② 결산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사업년도말에 공시

<討論者 發表>

個人年金制度 導入案에 대한 考察

金 基 洪 博士

(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개인연금제도 도입안에 대한 고찰

1. 머리말

- 일본의 개인연금보험이 도입된 1960년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5.7%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도 현재 5.8%~6% 정도로써 일본의 개인연금 도입 당시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개인연금을 도입한 이유중의 하나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이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중의 하나이고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 UN 분류법에 따르면 노령화 국가를,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령화 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되는 기간은 25년이 소요되었다(1970~1995).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에서 노령인구가 7%되는 해를 2001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3년에 14%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22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70년, 프랑스는 130년이 소요되었음을 볼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세제혜택내용과 중도해지시의 벌과금 조항

-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법률안 즉,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사항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재무위를 3월 2일 통과하였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결정한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당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겠다. 조감법 개정안 80조 2항에 의하면, 세제혜택은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급 시에도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매우 수준 높은 세제혜택 내용이라 판단된다.

-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은, 연간 72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로 되어 있다.

- 일본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거의 2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금을 지급받을 때도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연금불입액의 이자소득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은행의 경우 이자소득분에 대해서 20%의 분리과세를 원칙적으로 하고, 생명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잡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 외국의 예를 보면, 주로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지급을 받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경우는 지급을 받을 때에는 비과세 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외국의 개인연금세제를 비교해 볼 때 이번에 정부에서 결정한 세제지원내용은 그 방식과 액수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 「조감법 개정안」에는 개인연금상품의 중도 해약시 추정세 부과를 위한 벌과금 조항이 있다.

- 소득 공제분에 대해서 불입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중도해약을 하면 불입액의 4%, 연 7만 2천원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소득공제 액수의 10%를 벌과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되겠다. 지급시의 이자소득분에 대해서도 만료 이전의 해약이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일시금)는 이자소득세를 현행대로 원천징수 하게 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작성시의 고려사항,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자산운용등에 관한 제언

가. 개인연금 상품의 적격요건 및 수탁기관

- 조감법 내용중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세제지원 내용만을 다루었는데 세제지원 대상에 대하여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적격요건을 갖춘 상품이 어떤 것이냐가 결정될 것인데 적격요건에 대해 기 보도된 자료등을 참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전국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한이 없다.

- 최소 의무납입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연금지급개시연령은 55세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 직장의 퇴직연령이 60세 이기 때문에 60세로 정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직장의 퇴직 연령이 55세로 되어 있으므로 55세를 연금지급 개시연령으로 하고 있다.
- 가입한도금액은 잘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급시에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과세 회피수단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이용하여 과세 회피 수단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한도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곧 결정할 것이다.
- 기존 계약자의 처리 문제는,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기존의 계약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대상 상품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 수탁기관은 재무부장관령의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등을 엄격히 설정해서 해당기관 경영진의 도덕성이라든지 재무구조의 안전성, 유사상품취급 경험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에서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개인연금보험 상품개발

- 세계 적격 상품의 개발은,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수탁기관으로 어떤 기관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수탁기관별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일단 개인연금보험상품 위주로 말씀드리면, 개인연금보험상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적격 요건을 갖춘 틀을 짜야 하며 그 틀에 맞추어서 상품개발을 해야 적절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하며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며, 어떻게 고객에게 어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 타금융기관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보험특성을 살린 개인연금보험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 개인연금 상품의 큰 매력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상품 판매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획기적인 세제혜택을 누리는 개인연금보험은 상당히 인기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모든 수탁기관들이 각각 적격요건을 갖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것이므로 세제혜택은 적격요건을 갖춘 모든 기관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세제혜택이라는 장점 하나만 가지고 타 금융기관과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과의 효율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자신들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사의 상해나 사망에 따른 보장을 포함하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타 금융기관의 상품에 비해서 혜택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가진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

이지만 이 장점을 비교우위로 장점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시에 수익성도 적정하게 보장해 줄 수 있어야만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앞에 발표하신 발표자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회사가 이길 수 있는 장점을 두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생보 상품이 타 금융기관 상품보다 혜택의 범위가 넓다는 점과 판매 네트워크가 좋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제혜택이 생보사 상품에만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 혜택의 범위가 넓은 상품이나 네트워크가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보사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되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조직이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금융기관 상품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 타 금융기관과의 수익률 경쟁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다.
 - 상품자체가 반드시 타 금융기관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상해나 사망 등의 보장을 상품에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점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적정한 수익성도 갖추어져 있어야 그 특성이 진정한 장점이 되는 것이다. 수익율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상품 특성의 장점과 수익율이 대체(trade-off)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 경쟁하는데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으로 실적배당을 할 경우, 수익율이 보험사 상품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상품에는 상해나 사망이 코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같더라도 지급받는 연금액만을 놓고 볼때는 보험사의 연금액수가 적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점을 감안하고 은행과 수익율만을 비교했을 때 은행에 비해서 보험사 상품의 수익률이 상당히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 더우기 소비자들이 점점 복합적이어서 상품을 비교하는 능력이 많아지고 자기자신의 노후 소득에 대한 자산관리 능력이 생길 것이므로 보험사들은 타 금융기관 상품과의 수익률 경쟁에 대비를 하여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도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자산 운용

- 실적배당부 상품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시 이에 따른 자산운용의 문제를 위해 다음 사항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실적배당이라든지 분리계정을 당장은 실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인연금보험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하는 추이를 살피고, 타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일년이 경과했을때 금융기관별 시장점유율의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관찰해서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보험사들도 실적배당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분리계정 도입 근거를 확보해 놓는다면 향후 필요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보험료 납입기간중에도 상품의 매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앞의 발표자가 일본의 예로 설명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도 적당한 시기에 소비자 니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

적배당이나 분리계정도입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앞의 발표에서도 개인연금보험은 불입기간도 길고 연금지급기간도 길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연금상품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러한 금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연동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상품판매가 가능하다면 개인연금보험시장에서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연금보험의 성공여부는 소비자들이 개인연금을 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며, 소비자들이 개인연금에 대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플레이션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 따라서 금리연동형 상품의 개발로 인플레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다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6년동안 중지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였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않아 중단했다는 것으로 이 일본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을만한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장치

- 개인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판매시 가입자를 위해서 세제혜택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해약시 추정세 부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만 사후의 보험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익율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여야만 사후 해약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기존 연금보험 계약자 처리등을 포함하여 위의 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모집인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 연금지급 불능시 지급보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아래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수탁기관이 속한 현행 보증기금의 이용

- 별도의 보증기금 설립

- 재보험의 의무 가입

- 개인연금보험의 소개 및 판매에 따른 보험사 판매요원들의 교육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으며, 개인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계약유지율을 높여야 하므로 가입자 보호 장치를 잘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아울러서 가입자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討論者 發表〉

適格個人年金保險商品の導入方向

李 鳳 周 博士
(保險開發院 研究委員)

I. 개인연금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연금보험의 판매 현황

- '94년 1월 1일 현재 판매중인 개인보험상품은 총 174건이며, 이중 연금보험은 37건, 교육보험 40건, 양로보험 32건, 보장성보험 65건으로 이를 건수비율로 볼 때 연금보험은 전체 개인보험상품의 21%를 점유하고 있음.
- 한편 37건의 연금보험상품중 업계 주력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과 노후설계연금보험은 저축위주로 설계되어 단기저축성보험으로 판매되고 있고 나머지 35건의 상품은 저축과 보장이 함께 설계되어 있어 실제연금보장기능은 미미한 실정임.
- CY'93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중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수준이며 이중 노후복지연금보험과 노후설계연금보험이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80% 수준에 달하고 있음.

기존 6사 개인보험 판매실적

(기간 : '93.1.1 - 12.31)

구 분	개 인 연 금				개인보험
	노후복지	노후설계	기타연금	계	
수입보험료(억원)	42,833	48,433	23,669	114,485	174,828
점유율(%)	51.9		13.6	65.5	100
	79.3		20.7	100	

주: 개인보험 총수입보험료중 노후복지연금의 점유율은 24.2%이고 노후설계연금보험의 점유율은 27.7%임.

- 인구의 노령화 및 핵가족화의 확산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또한 '93년 7월 부터 연금보험에 대한 위험보험료 구성비의 상한규제가 15%에서 4%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연금보험상품의 개발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음.

2. 개인연금보험상품의 분석

가. 전통형연금보험

- 현재 판매중인 연금보험의 대부분은 전통형연금보험으로, 연금지급개시전인 제1보험기간은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으로 사망 및 재해보장 등 다양한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제2보험기간에는 연금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형 및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구분함.
- 전통형연금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제2보험기간중의 연금지급을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 55, 제1보험기간의 각종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 29, 사업비 16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통형연금보험의 경우 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높아 수익률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실제연금에 대한 메리트가 상실되어 중도해지계약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제연금 지급건수는 미미한 실정임.

나. 금융형연금보험

- 금융형연금보험은 크게 금리연동부상품과 실적배당부상품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현재 금리연동부상품으로 1년만기청기예금이율에 연동된 노후복지연금보험과 노후설계연금보험이 있음.

- 금융형연금보험은 연금지급개시전 보장이 약한 반면에 제 2보험기간 중 고액의 연금을 확정형, 종신행, 상속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금의 지급대상은 개인형에 한정되어 있음.
- 금리연동부보험의 대표적 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보험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을 위해 적립되는 금액이 90, 위험보장과 사업비를 위한 금액 10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연금보험의 보험료구성비 비교

(단위 : %)

구 분	연금부분	위험부분	사업비부분	합 계
전통형연금	55	29	16	100
노후복지연금	90	3	7	100

- 노후복지연금보험과 노후설계연금보험은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목돈마련을 위한 단기저축성상품으로 인식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들 상품이 5년만기 형태로 변칙 운용되고 있는 이유는 5년 이후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아 수익률이 높다는 점과 생보사들이 수지차 확보 및 고수익률 상품의 장기보유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단기상품 위주의 영업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개인연금보험의 문제점

가. 상품구조상의 문제점

1)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 수단 미비

- 연금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연령이후 일정기간 또는 종신까지 연금이 지급되므로 높은 인플레이하에서는 실질가치 유지가 어렵게 됨.
- 연금자산만을 별도 운영한 실제수익을 연금에 가산지급하는 실적배당부 상품이 없음.

2) 보험회사의 연금지급화 노력의 미흡

- 보험상품설계시 순수생존연금으로 설계하지 않고 생사혼합형 연금보험형태를 취함으로써 연금상품으로서의 기능을 감소시켰고 또한 연금지급형태의 일시급 허용으로 연금의 효용가치를 저하시켰음.

3) 보험가입자의 연금에 대한 인식의 미흡

- 대부분의 보험가입자가 연금보험상품을 연금수급이 아닌 목돈마련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연금보험가입을 통하여 마련된 목돈을 연금으로 수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고금융상품,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는 투자심리가 강함.

나. 보험수리상의 문제점

1) 개인연금사망율의 부제

- 현행 경험생명표상의 연금생존, 사망율은 순수연금보험에 한하여 기업·단체보험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연금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사망율의 도입이 필요함.

2) 1급장해율을 제외한 개인연금사망율의 산출 필요

- 연금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에서 1급장해는 사망과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경험생명표상의 사망율은 1급장해자를 포함하여 산출되어 있음.
- 그러나 연금보험에서는 일반보험과 상이하게 1급장해를 생존으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망율과 1급장해율의 구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제 2회 경험생명표상의 1급장해율은 재해로 인한 경우만 산출되어 있고 재해 이외의 경우 즉 질병으로 인한 1급 장해율은 구분되어 있지 않음.

3) 상품관리규정상의 위험보험료 한도의 규제 완화

- '93. 6월 상품관리규정 제정시 연금보험의 위험보험료 구성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순수생존연금보험의 도입을 위하여서는 연금보험에서의 위험보험료 구성비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II. 적격개인연금보험 상품개발 방향

1. 상품유형결정을 위한 검토사항

가. 개인연금보험이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

1) 전통형연금보험

- 전통형연금보험 도입시 현행의 예정이율을 적용할 경우 장래의 손익 규모는 향후 금리추이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겠으나 금융형연금보험보다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임.
 - 또한 중도 계약해지자에 대한 세제혜택분을 환수할 경우 유지율이 크게 개선되어 보험료를 장기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정사업비의 규모는 현행 연금보험 수준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에도 금융형연금보험보다 예정사업비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회사의 비차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예정사망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행 배당사망율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생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금리연동부연금보험

- 금리연동부연금보험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현행 노후복지연금보험에
서와 같이 정기에금 이율동에 일정율을 추가 보장하므로 타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고 또한 판매의 용이성으로 외형을 성장시키는 데는 일
조할 수 있으나 높은 금리부담으로 인하여 회사의 손익구조 개선 효
과는 미미함.
- 예정사망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통형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현행의
배당사망률을 사용할 경우 높은 유지율과 사망률의 고평가로 인해서
생존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예정사업비의 규모는 수익률을 고려할 때 현행 노후복지연금보험 수
준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사업비 재원이 전통형 연금보
험보다 적어 비차손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할 것임.

3) 실적배당부 개인연금보험

- 실적배당부 상품을 도입할 경우 시장의 실세금리가 상품의 수익률에
즉시 반영되므로 실질가치유지가 가능하고 고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
어 타금융권과의 수익률 경쟁 측면과 계약자의 금리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임.
- 그러나 실적배당에 따른 이익 유보의 곤란으로 경영 악화시에 충당
할 완충재원 확보가 어려우며, 상품의 성격상 낮은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 비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계정의 운용시스템 및 보전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되고 분리계정에 대한 초기투자(seed money)가 요구되므로 이연자산 상각문제를 안고 있는 소형사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형 보험상품의 성격상 향후에 저수익 환원 또는 무수익 환원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큼.
 - 즉 실적배당부상품 판매시 수익률이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며 이러한 고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나 판매확대를 위해 고수익성만을 강조하거나 허위설명등에 의한 부실판매가 자행될 소지가 큼.
 - 이에 따라 일정판매자격요건을 갖춘 모집인에게만 판매허용하는 것이 요망됨.

나. 은행과의 경쟁 판매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1) 은행상품과의 경쟁력

- 은행의 연금상품과 비교할 때 연금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보험료 구성상 부가보험료부분이 불가피하므로 실제 보장 및 연금지급을 위하여 운용되는 금액은 적음.
- 은행의 경우 전체 납입금을 실세금리로 부리하여 그 운용실적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보험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예정이율 체계를 사용하여 책정된 금액에 계약자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등과 연동하는 등 금리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므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열세에 있음.

○ 따라서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연금액의 수준은 다소 격차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세제적격상품의 도입으로 유지율은 향상되겠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분의 환수는 물론 해약환급금이 은행권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 그러나 보험상품은 급부설계에 있어서 연금과는 별도로 위험에 대한 보장과 상품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종신지급이 가능하다는 점과 모집인이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에 대한 메리트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권에 비교우위가 있음.

2) 전통형연금보험에 대한 영향

- 현행 연금보험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형 연금보험상품은 연금급부와 보장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어 다양한 보장에 대한 메리트는 있으나 실제 주요급부인 연금연액이 은행신탁이나, 금융형 연금보험보다 낮고 또한 배당예시도 할 수 없으므로 타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짐.
- 다만 다양한 위험보장의 확충 및 배당예시제 도입등으로 판매력을 강화시킬 경우는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전통형 연금보험은 상품구조상 연금수준이 타상품에 비해서 낮은 반면 모집수당의 조정을 통한 모집인의 관심유도 및 연금 개시전의 다양한 보장혜택등의 상품력 개선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연금상품보다 판매 신장이 예상됨.

3) 금융형연금보험에 대한 영향

- 금융형연금보험을 정기에금이율 연동보험으로 개발할 경우 은행의 연금신탁에 비해 전통형 연금보험보다는 연금부분의 경쟁력은 있으나 현행 노후복지연금보험과 같이 보험료 구성상 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 부분의 책정이 불가피하고 부리이율과 은행의 실질자산운용 수익률과의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연금연액이 적어짐.
- 다만 이와 같은 상품은 보험모집인이 판매하기에 가장 용이한 상품으로 은행상품에 비해서 위험보장이 있고 또한 모집인에게는 판매수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판매조직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시장 선점에 유리할 수 있음.

금융기관별 연금보험 실적 비교

(’93. 9월말 기준)

상품명	노후복지연금보험(생명보험)	노후생활연금신탁(은행)
실적	9조8,000억원 (총수입보험료 22조 6,000억원)	6조 8,000억원 (총신탁계정 69조 5,600억원)
기관수	33개	51개
점포망	5,127개	11,174개

- 그러나 이 상품의 경우는 제3단계 금리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정기에금이율의 자유화로 대체이율이 검토되어야 하며, 한편 향후 실세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전망임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의 수익률 부담으로 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보험상품구조상 은행상품과의 수익률 경쟁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금융형연금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수익률 경쟁보다는

다양한 위험보장등 보험 고유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함.

2. 적격개인연금보험의 개발방향

가. 기본방향

- 현행 연금보험시장과 대동소이하게 전통형 및 금리연동형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판매는 회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실적배당부상품은 분리계정 도입여건의 미비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준비토록 함.

나. 전통형연금보험의 개발 방향

- 보험상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 보험회사의 안정적 성장, 모집인의 수입보장등 3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조합되는 3者 共榮의 原則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하나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은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상품으로 3가지 요소중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이 강조되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소형사의 경우는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함에 있어서 향후 보유상품의 변화구조와 회사경영의 안정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손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이 필요함.

- 적격개인연금보험의 급부는 현행의 보장위주에서 소비자니드에 부응하도록 실질적인 연금수혜기능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는 연금보험이 타상품에 비해서 세제혜택이 주어져 판매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과 사회보장기능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현행 수준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여 개인연금보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어져야 함.

다. 금리연동부연금보험의 개발 방향

- 기존의 연금상품이 회사의 영업정책 위주로 판매되어 개인의 연금수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새로 개발될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의 실질적인 연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생명보험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새로 도입되는 개인연금보험은 은행 등의 타금융권과 경쟁판매시 수익률 측면에서 생보사들의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청됨.
- 이를 위해 개인연금보험에 대해 생보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생존확률(life contingency)을 적용하여 연금지급기능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요망됨.
- 즉 금리연동부연금보험의 개발방향은 보험고유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위험보장과 실질적인 연금수혜가 가능토록 함으로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야 할 것임.

- 연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연령 이후 종신까지 지급되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 보험료 납입에 자율성을 두어 소득증가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고 연금도 체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금리연동부개인연금보험 상품이 타 보험상품에 비하여 고수익률이 될 것이 예상되므로 타상품의 계약자와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계약자간에 이익상충이 우려됨.
- 따라서 구분경리를 통한 명확한 손익분석을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임.

III. 적격개인연금보험상품의 운용 방향

1. 상품개발방식

- 적격개인연금보험 상품을 업계 공동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새로운 상품내용과 세제혜택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홍보가 가능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을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업계 공동상품으로 개발시 상품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판매실적이 상품의 차별화나 판매전략 보다는 회사의 영업조직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어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제공 등의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으며,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소형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의지에 상관없이 공동상품을 판매하여야하는 부담이 있음.

- 즉 상품개발 능력이 약한 일부 소형사를 제외하고는 상품에 대한 자율성이 배제되어 대부분의 소형사의 경우 판매력에서 우세한 대형사에 비해 영업이 불리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적격개인연금보험은 업계 공동상품으로 개발, 운용토록하는 한편 차별화 전략이 가능토록 각사별로 단독상품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기존상품과의 조화 및 균형 유지

- 적격개인연금보험이 도입될 경우 기존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에게도 계약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세제적격특약으로 운용이 가능함.
- 개인연금보험 이외의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타 저축성보험이 세제상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인연금보험과 타상품과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즉 현행의 생명보험상품관리규정을 일부 조정하여 타종목의 상품개발도 활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사에서도 기존시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전략이 필요할 것임.

3. 세제적격특약에 의한 상품 운용

- 세제개정에 따라 개인연금보험료의 일부가 소득공제되므로 세제적격요건을 제도 특약으로 개발하도록 함.
 - 연금보험에 제도특약을 부가함으로써 특약의 가입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안내장 등의 일부에 세제적격요건을 조분화하는 것은 업무의 번잡을 초래하므로 제도특약의 개발·부가로 상품운용 및 관리가 용이함.
- 특약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수급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보험료의 납입은 연 1회 이상일 것(일시납 제외).
 - 최초 연금지급개시시 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며, 불입누계액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연금수취인은 피보험자와 동일인일 것.

4. 타금융권과의 경쟁 강화

가. 계약자배당 예시제 허용 검토

- 보험업법 제 155조(모집문서도화) 및 보험감독원의 '보험회사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계약자 배당 예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리차보장금은 배당이 아닌 예정이율로 간주하여 배당예시를 하고 있음.
 - 155조의 내용 ; "모집문서도화에는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못한다."
-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으로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사항이 노후연금액에 있으므로, 상품판매시 예상연금액의 제시는 필수적임.
- 따라서 보험업법등 관련법규 개정을 통하여 배당예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업계는 공동으로 안정적인 배당예시기준을 설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나. 연금수혜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급부설계의 강화

- 보험상품은 보험료 구조상 위험보험료와 예정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 타금융권 상품과의 수익률 경쟁에서 열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중도탈퇴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환수하여 그 재원을 연금수혜자에 추가로 보장함으로서 연금을 극대화하는 급부설계를 검토할 수 있음.
- 즉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중도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그 당시의 책임준비금보다 적게 책정(일반적으로 기납입보험료 수준)하여 그에 대한 차액을 연금수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또한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차액은 연금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품을 운용하는 것임.
- 또한 사망시 유족연금지급, 장해시 소득보장연금 지급 및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입원 및 개호에 대한 보장과 연금의 혜택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고 연금지급방법도 은행의 경우 확정형만 지급이 가능하나 보험의 경우에는 물가와 연동해서 종신까지 지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한 점을 강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다.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노인홈을 건설하여 무의탁 노령층을 수용하거나 보험기간중 계약자에게 무료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례절차 및 회갑동 경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운용, 노령

충 계약자에게 비상구급연락망 운용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또는 여행사와 제휴하여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행경비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방안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연금보험의 서비스 강화방안으로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 식사, 의료서비스, 문화시설과 활동의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종신까지 제공하는 연금의 현물지급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가 요망됨.

라. 보험보장기능 강화 및 마케팅 활성화

- 은행상품의 경우에는 급부내용이 단순히 연금지급에 그치지만 보험에서는 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는 다양한 보장과 배우자까지로의 피보험자 확대등 보험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음.
- 모집인제도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보험의 장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연금보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은행권과의 수익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생보사들의 경우 개인연금보험의 사업비를 낮추는 대신 기존의 판매방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판매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IV. 결론

1. 상품유형

가. 전통형연금보험

- 전통형 연금보험은 연금 및 다양한 보장기능으로 소비자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고 보험료에 비하여 모집인의 보수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금리연동부상품보다 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경영내실화 전략에 적합한 상품임.

○ 다만 지금까지 보험시장이 단기상품 위주로 판매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영업조직의 의식전환이 필요함.

- 사업비 이연상각 문제가 있는 소형사는 개인연금보험을 전통형 상품 위주로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함.
- 또한 타금융권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의 효율적 운영으로 계약자 배당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계약자 배당 예시제의 허용이 요망됨.

나. 금리연동부연금보험

- 금리연동부연금보험은 기존의 주력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 형태와 유사하여 판매가 용이하고 전통형 연금보험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회사의 손익 측면에서는 전통형연금보험보다 자산운용의 부담으

로 장래에 회사손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보장이 미미한 관계로 타금융권 상품과 직접적으로 상품비교(연금연액)가 되었을 때에는 보장기능이 약하면서 또한 연금지급액도 열세임.

- 따라서 타금융권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회사의 경영추이에 따라 계약자 배당의 강화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금리연동부상품은 일반보험과 구분경리를 실시함으로써 손익 등의 경영실적을 명확히 하여 이익배당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다. 실적배당부연금보험

- 실적배당부 상품은 시장의 실세금리가 상품의 수익률에 즉시 반영되므로 실질가치유지가 가능하고 고수익률을 반영할 수 있어 타금융권과의 수익률 경쟁과 계약자의 금리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임.
- 반면 이는 분리계정으로 인한 손익의 투명성으로 회사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낮으며, 투자기법의 제고, 리스크 관리 방안 강구 및 각종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아울러 모집인의 판매자격기준의 설정, 계약자의 자기책임원칙등의 제약조건이 따름
- 따라서 단기적으로 도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계약자 선택권의 확대 및 타금융권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분리계정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보험업법 개정시 분리계정 도입 근거를 확보토록 함.

2. 상품개발 및 운용

가. 예정기초율

- 예정사망율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사망율을 조속히 도입,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정이율은 전통형연금보험의 경우 현행 배당예정이율인 7.5%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연동부연금보험의 기준금리는 향후 금리자유화 환경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고유금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정사업비율은 전통형연금보험의 경우 현행보다 70-80%수준, 금리연동부연금보험의 경우는 노후복지연금보험 수준보다 다소 낮게 책정하여 연금연액을 보다 충실화하여야 할 것임.

나. 금부설계

- 전통형연금보험의 경우 다양한 보장이 필요하나 연금보험의 주요급부가 연금이므로 보장부분을 일부 축소하여 연금연액을 현실화시키고 보장부분은 다양한 보장특약으로 운용토록 함.
- 금리연동부연금보험의 경우는 현행 노후복지연금보험 수준에서 보장을 하되 사망보험금에서의 책임준비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이와 중도해약시 예정이율의 차등적용으로 인한 차액을 연금연액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 운영함.

다. 상품판매

- 상품의 도입은 우선적으로 전통형 연금보험과 금리연동부연금보험을 도입하되 회사의 영업전략, 손익측면을 고려하여 두 상품의 판매비중을 균형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함.
- 일부 소형사에서는 손익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보유계약의 점유비율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판매력 신장보다는 경영안정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전통형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상품운용

- 적격개인연금보험 도입시 일관성 있는 홍보 전략과 소비자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업계 공동상품으로 개발운용토록 하는 한편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도록 단독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개인연금보험가입자에게는 적격요건에 부합될 경우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 금융권과의 경쟁강화를 위하여 계약자 배당예시 허용이 요망됨.
- 상품운용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제적격특약을 개발하도록 함.

마. 세제

- 고연령층의 보험료납입기간에 대한 배려가 요망됨.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할 경우 현재 46세 이상의
연령층은 적격개인연금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형평성
을 침해함.
- 또한 노후소득보장과 저축증대라는 개인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 연령층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
하는 것이 요청됨.
- 적격개인연금보험에 상해특약, 질병특약, 입원특약, 수발특약등이 부
가될 경우 연간 소득공제혜택의 범위내에서 특약보험료도 개인연금
보험료 세제혜택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討論 및 質疑應答 內容

질문 1

일본 생보사의 연금보험상품이 신한은행 등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제혜택이 생보사에만 있기 때문이 아닌가?

답 변

생보사의 연금보험상품이 타금융기관의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이 생보사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생보사의 연금보험상품은 타금융기관의 연금상품과 다른 세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예정이율에 의한 연금액의 최저보증이 있고 둘째, 연금지급을 종신까지 보장하는 종신연금은 생보밖에 없고 셋째, 의료, 입원, 상해특약 등을 부가하여 소비자의 니드에 따라 다양한 특약을 부가함으로써 다양한 패키지 상품의 제공이 가능하다. 상품력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장점을 이용하여 타금융기관의 연금상품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생보사의 연금보험상품의 최대의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판매서비스 네트워크이라 하겠다. 모집인을 통한 판매를 통하여 정기적인 방문과 밀도있는 보전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생명보험회사뿐이다.

질문 2

우리나라 생보사의 연금보험상품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향후 실적배당상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

답 변

변액연금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최저보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리스크는 계약자 책임으로 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에 운용결과에 따라 100% 리스크를 계약자 책임으로 할 경우에는 판매용 팜플렛에 최저원금보증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판매시에도 리스크를 전적으로 계약자가 진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업측에서는 유리한 점만 설명하고 불리한 점을 설명치 않고 있다가 운용이 실패하면 이점이 계약자 민원으로서 문제가 된다.

또한 변액연금보험 판매를 위하여는 자산운용 부분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투자리스크가 분산되어야 하고 동시에 유리한 운용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검토되고 자산운용체제가 갖추어진 후에 변액연금보험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변액보험의 도입시에는 일본의 변액보험 판매후의 자산운용실패, 민원악기 등의 많은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질문 3

세제적격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해약시 기수혜받은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추징세(Penalty Tax)가 있는가?

답 변

해약시 추징세는 일체 없다.

질문 4

적격개인연금보험에 대한 대고객 홍보전략은 ?

답 변

보험의 홍보매체는 신문, TV 등의 미디어인데 이중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은 TV를 중심으로 하여 홍보하고 적격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상품 안내장, 기타 유인물을 모집인이 직접 지참하여 계약자에게 홍보하고 또한 개인연금에 관한 비데오를 제작하여 고객의 집에서 비데오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질문 5

연금보험 예정이율기준은 무엇이고 중도해지이율은 사용하고 있는가?

답 변

개인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은 개인보험과 동일하며 중도해지이율도 적용하고 있다.

질문 6

연금수령시 또는 연금개시전 일시금 수령시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

답 변

배당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수령시의 과세는 연금수취액 $\times \left(1 - \frac{\text{기납입보험료 총액} - \text{기지급배당금총액}}{\text{연금지급총액 또는 예상액}} \right)$

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이자부분 즉 수익부분으로 간주되어 잡소득으로서 연간소득에 가산되어 과세됨.

또한 수취인과 계약자 (=보험료 부담자)가 동일인일 경우 연금개시전에 해약환급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는 일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주민세가 과세된다. 이 때의 일시소득 금액 계산방법은 {(총수취금액 - 기납입보험료총액) - 일시소득 특별공제액 50만엔} $\times 1/2$ 이 연간소득에 가산되어 과세된다. 여기서 총수취금액에는 해약환급금 외에 적립배당금도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부담자 이외의 자가 해약환급금 수취시는 증여세가 부가되는데 이 때의 증여세 과세가격은 (해약환급금 등 - 연간 증여세 기초 공제액 60만엔)에 의하여 계산된다.

질문 7

세계적격 연금보험에 있어서 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초가납입시 운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 변

납입보험료의 한도규정은 없으나 세계적격 혜택상한이 10만엔 이상 보험

료를 납입하여도 세제혜택범위는 동일하다. 또한 세금감면을 포함한 실질 이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히 1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질문 8

세제적격제도 도입당시(1984년) 기존 연금보험 계약자에게도 적격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는가? 또한 적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답 변

적격요건에 해당된 기존계약에 대해서는 세제적격특약을 중도부가하여 세제적격계약으로 인정하였고 적격요건을 충족치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후 세제적격특약을 부가하여 인정하였다.

질문 9

부부형 연금보험가입시 연금세제지원이 가능한지?

답 변

가능하다.

질문 10

부부형 연금보험계약에서 연금수령중 주 피보험자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수령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답 변

우선 증여세는 관계가 없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취득한 연금수습권의 평가액에 따라 과세되며 연금종류와 잔존기간, 권리취득시 연령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진다. (상속세법 제24조)

확정연금의 경우, 잔존기간에 따라 그 잔존기간에 수취하게 될 연금총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권리가액이 된다. 단 1년간에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확정연금권리평가의 비율은

5년이하의 경우 70/100,

5년초과 10년이하의 경우 60/100,

10년초과 15년이하의 경우 50/100,

15년초과 25년이하의 경우 40/100,

25년초과 35년이하의 경우 30/100,

35년초과의 경우 20/100 으로 되어있다.

종심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은 연금수취인이 수급권리를 취득한 시점의 연령에 따라 1년간에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권리가액이 된다. 즉

25세이하의 경우 11배,

25세초과 40세이하의 경우 8배,
 40세초과 50세이하의 경우 6배,
 50세초과 60세이하의 경우 4배,
 60세초과 70세이하의 경우 2배,
 70세초과의 경우 1배로 되어있다.

유기연금의 경우는 확정연금으로서 산출한 금액과 종신연금으로서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권리가액으로 한다.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의 경우는 보증기간을 확정연금기간으로서 산출한 금액과 종신연금으로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권리가액으로 한다.

질문 11

일본 개인형상품의 각 수탁기관별 마켓셰어의 현황은 어떠한가?

답 변

연금시장의 마켓셰어는 생명보험(공제, 간이보험 포함)이 80%, 그리고 나머지 20%를 신탁은행, 은행, 증권, 손해보험이 점하고 있다. 이중 생명보험 80%의 내역을 보면 생명보험이 75%, 간이보험이 21%, 농협공제가 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을 참조를 한것에 불과함. 특히 이중에서도 나머지 취급기관에서 손보가 최근에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93년 4월에서 7월사이에 손해보험의 신계약수가 생명보험의 신계약수의 10%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즈비시신탁은행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연금 신탁은 6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질문 12

일본의 개인연금보험 판매와 관련 판매확대 측면에서 판매조직 운영상황은 ?

답 변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특별판매조직은 가지고 있지 않다. 판매전략에 있어서는 기계약자를 중심으로 추가계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약자의 경우 사망보장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연금과 일반생명보험을 별도로 2건이상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홍보와 함께 기계약자에게 추가가입하도록 모집인에게 교육하고, 신입직원에게도 처음 판매시 연금판매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개인연금보험이 반드시 높지는 않지만 니드가 높기 때문에 기계약자에게 추가로 연금보험을 권유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질문 13

적격연금 개발시 업계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였는가?

답 변

연금개발시에는 단독으로 개발 그러나 세계적격특약의 경우에는 업계 공동으로 개발하여 거의 동일한 적격특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특약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질문 14

일본 개인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회차별 유지율 수준은 ?

답 변

수입보험료는 월 평균 13,000円 정도이고 유지율은 13회차가 87~88%, 25회차가 80% 정도이다. 월 평균 13,000円 정도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 이는 가입자 구성분포 중 20~30대가 많기 때문이다.

질문 15

개인연금보험의 한 과제중 예정이율에 관한 문제로서 생명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체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차손이 발생 한다고 하였고 손해보험의 연금지급식 적립상 94년 1월중에 예정이율을 4.5%에서 3%로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였다고 하는데 생명보험의 예정이율은 왜 변경할 수 없는가?

답 변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을 최저보증하고 있으므로 최저보증부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정의 예정이율(현재 4.75%)을 사용하고 있다. 이 예정이율은 최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이회율이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최저보증부분이 없으므로 약관상 도중에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

다고 기재되어 있다. 생명보험의 예정이율은 94년 4월에 4.75%에서 3.7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개인연금보험이든 보장성보험이든 최저보험 금액 또는 최저연금액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예정이율은 이 최저보증부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예정이율을 바꿀수 없는 것은 한국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다. 종전에는 이차익, 사차익, 비차익의 3이원별 배당방식으로도 각각 이익을 내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이차는 매우 큰 손실을 내고 있다. 이차손 부분에 대해서는 사차익, 비차익에 의해 카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크므로 유가증권의 매각익, 평가익을 발생시켜 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3이원별 배당」 방식에서 이차, 사차, 비차,매각 및 평가익에 의한 「종합수익배당」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질문 16

연금보험 계약자 중 연금수급연령 가까이 되어서 가입하는 자와 젊은층의 가입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답 변

명치생명의 경우 신계약 가입자의 연령구성을 보면 20대가 35%, 30대가 35%, 40대가 20%, 나머지가 10%로서 젊은층의 가입자가 많다. 젊은층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첫째, 젊었을 때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면 소득세의 절세효과가 크고,

둘째. 젊었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세째. 모집인들의 활동대상이 주로 직장(직단)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령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매우 비싸진다. 따라서 고령자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일시납으로 가입하여서 몇년간 거치해 둔 후 연금을 수급하는 케이스가 많다. 또한 간이보험의 가입자는 40~60대의 고연령층 가입자가 많은데 그 이유는 간이보험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이 납입기간이 짧은것이 많고 최저가입연금액(민간생보 : 30만円, 간이보험 : 18만円)이 작고 또한 가입기간이 생명보험에 비해 짧아 고연령층계약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질문 17

통상 연금이라고 하는것과 보험이라고 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의 사고에 의해서 재산의 손실이 생겼을 때 재산을 보충하는 재산의 형성에 있고 연금은 소득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성된 재산을 소비하는 성격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젊은사람의 가입자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름만 연금이지 연금보험으로 운영이 안되고 실제로 단기 저축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월보험료가 평균 13,000円씩인데 아무리 오래내도 장래연금재원 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본도 상당히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는것 같다. 실질적으로 젊은사람이 작은 보험료로 연금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보장을 아주 적게받고, 연금을 늘려받는 경우 또는 보장을 통상적으로 크게 받으면 연금을 받아

봐야 소액이 된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연금보험이 실질적으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세제 기타의 편의상 실제로는 보험기능을 하면서 그냥 이름만 연금이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싶다.

답 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대축으로 되어있고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을 보완하는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월평균 납입보험료 13,000円이 작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보장성상품과 연금형 상품이라고 하는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가지 기능은 보험회사의 기본적인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보장성 상품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어떻게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만일의 사고는 지금 발생할지도 모르므로 가족에 대한 보장은 가능한한 젊었을 때 부터 해둘 필요가 있다. 연금상품의 경우는 생존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 연금이 개시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장래 생존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적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젊었을때 처음엔 소액이라 하더라도 장래 소득이 향상되었을 때는 언제라도 연금액의 증액이 가능하므로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소득에 맞추어 적립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예를들면 30대의 사람이 개인연금보험을 위해서 월 보험료를 50,000円, 100,000円을 낸다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수입이 증가했을때 증액을 하는것이 올바른 가입형태라고 생각한다. 핵가족화가 진전되어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고 가족에 대한 만일의 보장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며 이해할 수 없다. 장래

의 부부노후생활자금이 평균 35만円이라고 예측되어 있는데, 이중 20만円은 사회보장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15만円을 기업보장과 개인보장에서 준비하면 된다. 따라서 준비시간도 충분함으로 젊었을때부터 소액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전 가입율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1970년대의 일본은 인플레이 시대였다. 이 인플레이 시대에는 장기저축의 유리성이 사라져 가족보장중심의 보장성시대가 되어 90%이상의 상품판매가 보장성 보험이었다. 현재 개인연금보험의 세대가입율은 40%(일반보험의 세대가입율은 90%이상임) 전후인데 40%가된 지금시점에서 국민의식이 노후를 자립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환경속에서 젊었을때부터 조기에 노후준비를 하겠다고 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질문 18

일본에서 개인연금보험의 세대가입율이 40% 정도라는데 이 가입자들이 보장형도 가입하고 추가로 연금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인가?

답 변

개인연금보험의 세대가입율이 40%라고 하는것은 일단 보장성 상품에 하나 가입해 있고 추가로 연금보험 상품에도 가입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본의 개인연금 보험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보장의 보완적 수단인데 후생연금, 기업연금이 제각기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시대에는 개인연금에 의한 노후보장 보다는 고액의 가족보장 니드가 중요하다. 따라서 1975년에는 90%이상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물론 보장성보험을 가입 안하고 연금보험에만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에 의한 것이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가입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질문 19

부부형 연금보험에 있어서 (주보험 + 배우자특약 + 의료관련 특약)의 상품 구조 존재여부와 배우자특약에 대한 보험료 부분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한 배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떠한가?

답 변

주보험에 배우자특약 + 의료관련특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특약 그 자체로 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고 배우자 개인연금으로 가입하면 연금금액이 낮아지게 되고 이부분을 처음부터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배우자특약은 개인연금보험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부연금은 처음부터 부부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치생명의 경우는 대체로 연금지급 개시전에 부부연금으로 이행하는 케이스가 많다.

배당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배당금 발생시는 과세되지 않고 배당금을 개인연금으로서 수취할 때에 과세된다.

연금보험에 주계약인 개인연금보험과 별도의 특약이 결합되어 있을 경우 개인연금용과 생명보험용 (연금의 특약부분이 이에 해당되어 소득공제)의 공제증명서가 한장으로 발행된다.

질문 20

변액보험과 관련하여 일본의 분리계정 도입 FLOW 와 관련시스템 구축상의 어려움점은 무엇이었나?

답 변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 단지 몇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액보험은 종래 전통형 보험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자산운용도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산운용부문도 독립시켜야 한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도입을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영업측면의 문제이다. 변액보험을 누구를 통해 판매할 것인가이다. 변액보험은 유가증권에 가까운 상품이기 때문에 모집인이 변액보험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업계공통의 변액보험 판매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둘째로 변액보험과 관련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세째로 자산운용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참고로 일본에서 변액보험을 도입하기로 하여 작업에 들어가서 도입하기까지 준비기간은 1년반 내지 2년 걸렸다. 또한 변액보험의 상품개발은 업계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업계공동으로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가 상호간에 시스템 구축에 관한 많은 정보교환을 했다.

질문 21

타금융기관의 연금상품과 생보의 개인연금보험을 생보의 소득세 공제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때 어느쪽의 수익율이 높은가?

답 변

타금융기관의 연금상품과 생보의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율을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 어느쪽의 수익율이 높은지는 알 수 없다. 생보의 경우 수익율은 가입한 시점의 예정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면 5.75%의 예정이율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타금융기관보다 수익율이 높다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신탁은행의 연금상품 예정이율 4.5%가 신탁은행으로서는 매우 험거운 상태로 보여진다.

수익율 비교의 문제는 이와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좋겠는가? 변동금리가 유리하겠는가? 어느쪽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어려운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질문 22

배당예상액으로 증액연금을 예시하여 판매를 하는데 증액연금이 낮아질 경우 계약자의 불만 또는 민원발생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고배당시의 가입설계서와 저배당시의 설계서는 확실히 배당 예상액이 다르다. 따라서 모집시에는 배당예상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기준이 달라졌을 때에는 장래 배당액이 제시한 예상 배당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확인해야한다. 민원발생소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가입설계서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배당에 의한 연금액은 변동(증감)한다>는 문언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또한 판매시점에서 배당의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와 예상배당액이 확정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모집인 교육도 중요하다.

예상배당액의 표시와 관련하여 변액보험의 표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변액보험에서는 장래 예상배당액을 9%로 운용하였을 경우, 4.5% (= 예정이율)로 운용하였을 경우, 0%로 운용하였을 경우등 세가지 케이스로 업계 공통으로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상태로 운용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표시가 없어서 실제로 변액보험 분리계정 자산이 마이너스 운용되었을 때 계약자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일반보험에서는 장래 이차 배당율이 0.1% 바뀌면 배당금액이 몇 만円 변동한다는 것을 설계서에 표시하고 있다.

질문 23

일본에서 1984년에 세제적격우대제도를 도입했을 때 당시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연금보험 기계약자에게만 세제적격특약을 부가하여 인정했는지,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계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답 변

1984년에 세제적격특약을 만들었을 때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연금보험에 세제적격특약만을 부가하였으므로 납입기간, 연금지급기간, 계약자와 연금수취인등의 적격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세제적격특약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세제적격특약을 부가함으로써 세제적격을 인정하였다.

질문 24

생명보험의 연금보험상품이 타금융기관의 연금상품에 비해 금리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답 변

생명보험의 개인연금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4.75%에서 3.75%로 다음달(4월)부터 1% 낮춘다고 하지만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8%-1.85%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는 계약자에게 있어 수익율이 저하되는 상품이 되긴 하지만 금융형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은 아직 충분히 있다 하겠다. 현재 원리금 보증상품중에서 예정이자율 3%를 넘는 금융상품은 없다. 또한 신탁은행의 경우 1991년부터 신탁은행업계 공동으로 개발, 판매한 개인연금신탁 <마이루트>가, 신탁은행업계 최고 대형사인 미쓰비시신탁의 경우 94년 현재까지 총 판매누계건수가 60여건 밖에 안될 정도로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은행의 예정이율 4.5%는 경쟁력 측면에

서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일본은 금융기관의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 금리수준이 되어 있으므로 생보의 3.75%가 오히려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다. 4월부터 시행하는 3.75%의 예정이율은 엄밀히 말하면, 3%~4%의 범위예정이율로서 인가를 받았으므로 장래 3.75%에서 더욱 낮출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예정이율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하겠다.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보험기간 10년이하의 상품에 대해서 예정이율이 6.25%였다. 당시에는 6.25%라는 수준이 높지 않고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되었다. 그런데 1994년이라는 불과 수년사이에 3%대로 예정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6.25%에 판매한 계약들이 현재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에는 생명보험회사들이 장기에 걸쳐 고정이율상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타금융기관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를 자유로이 바꾸는 것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질문 25

연금개시일이전의 배당방법으로서 반드시 적립배당만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변

연금개시일이전의 배당방법으로서 세제적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립배당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세제혜택을 받는대신 배당금을 적립하여 연금개시일에 증액연금을 매증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세제적격계약이 아닌 경우는 연금개시일이전에 현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질문 26

일본의 개인연금신탁 <마이루트>에서 예정사망율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망율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하는가?

답 변

개인연금신탁 <마이루트>는 보증기간부 유기연금인데 최후의 1년간의 비 보증기간에만 사망율을 사용한다. 사망율은 1990년도에 후생성에서 만들어 낸 제 16 회 생명표의 사망율에 70%를 곱한 사망율을 예정사망율로 사용한다.

질문 27

우리나라의 경우 적격연금상품을 은행과 동시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만일에 명치생명이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떠한 영업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변

첫째로, 상품면에서 은행과 다른 점으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즉 은행과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라면 수익을 경쟁만으로 판가름나지만, 보험은 좀다른 면이 있으므로 은행의 연금상품과는 색다른 특색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재형보험의 사례가 가장 좋을 것이다. 재형상품은 은행등의 타금융기관이 먼저 취급하고 생보가 나중에 진출한 분야이다. 그때는 단순히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납입보험료의 5배라는 재해보장을 부가하여 생보의 특색을 어필하였다. 둘째로, 모집인의 교육이다, 모집인에게 충실히 연금보험상품의 특징을 교육하여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여 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일본의 은행간에도 정기예금금리가 0.1~0.2%의 금리차가 존재한다. 완전히 동일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리차에서 열등한 은행상품은 전혀 안 팔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동일한 상품마저도 수익율만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고 판매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질문 28

대형생보사와 소형생보사간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답 변

첫째로 소형사가 대형사가 똑같은 상품, 똑같은 활동을 하면 반드시 지게 마련이다. 상품에 대해서는 특화해야 한다. 둘째로 판매대상을 좁혀 특화해야한다. 즉 니치 마켓의 개발인데 고소득 층이나 의사 변호사등의 전문 직업인 마켓등에서 양질의 계약을 중심으로 해야한다. 세째로 누구에게 보험판매를 담당시킬까인데, 처음부터 고자질, 고생산성을 갖춘 영업직원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지역, 지방에 특화하여 특정지방에서 우세를 차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와같이 소형사가 대형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형사와 부딪치지 않는 곳에 특화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한 회사로서 SONY생명을 들수 있다. SONY 생명은 고소득층 마켓에 특화하고 있는데 대형사들이 월 평균 신계약 세건의 거적을 올리고 있는데 반하여 8건의 신계약을 거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측면에 있어서 판매활동이나 상품지식을 가능한한 메뉴얼화 해서 교육투자의 단축도 필요하다.

질문 29

세제적격요건을 갖춘 연금보험상품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들어 연금 지급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등. 여기에 대해 계약 당시에 향후 20년 내지 30년 뒤의 연금액을 수령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가입자가 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일시금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이 경우 반대로 순수한 양로보험 형태에다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면 세제적격 요건이 될 수 있는가?

답 변

양로보험 형태의 지급방법에서 만기보험금을 연금지급으로 선택하는 것은 일본에도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없다. 세제혜택을 주는 의미는 제1보험기간에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만기 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세제혜택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양로보험 형태에는 개인연금보험료 세제혜택이 없다.

질문 30

연금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약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분을 환수 하는가?

답 변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일은 없다. 다만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연금의 현가를 지급 받는다. 종신보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해약이 되지 않는다. 부득이 해약이 된 경우는 보증기간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 연금현가를 지급받는다.

질문 31

기존계약에 대해서 세제적격계약으로 전환을 할 때에, 예를들어 처음 납입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지금 부과하는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하여 8년의 납입기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경우 적격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변경을 하는데 변경하는 방법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1. 보험료를 동일하게 놓고 납입기간만 연장
2. 1.의 경우 기초서류의 변경 여부
3. 구상품에서 신상품으로의 전환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달라.

답 변

기존 상품에 세제 적격특약만 붙여서 세제적격상품으로 전환하였는데 기존상품이 대체적으로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계약은 적격요건에 중요한 내용이 납입개시일, 연금개시일, 계약자와 수취인이기 때문에 납입기간이나 연금개시일 등의 요건을 세제적격요건에 맞게 변경을 시켜 중도 부가를 했고 납입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변경이 되지 않고 연금연액만 변경이 되었다. 또한 개별계약 내용이 변한것이 상품내용 자체가 변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서류 변경의 필요는 없다.

질문 32

현재 일본에서는 배당예시제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으로는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배당예시제의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배당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현금지급이 가능한 것인가? 현금을 받지 않고 예치할 경우 배당금의 부리이율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답 변

예산배당액의 예시는 물론 법적으로는 금지이다. 법적으로 예시는 금지라는 문구에 대해 대장성의 해석은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산출된 예시는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시는 법적 대응이 아닌 지침이나 사무 연락으로 허용하고 있다. 예시를 허용하는 전제가 두가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배당율이 전년도의 실적이 당년도에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계산

되어야 하고,

2. 배당적립율이 전년도의 실적이 당년도에도 계속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배당액을 예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인연금보험 예정이율은 4.75%인데 반하여 배당적립 이율은 4.8%로 높은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판매시에 조기 해약시 회사로서 손실이 큰 이유는 순보험료식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계약비는 개인연금보험 토달로 생각해서 선지급 투자되는 셈이므로 조기 해약시는 선투자된 신계약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보게 된다. 또한 연금개시후에는 배당금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질문 33

일본의 경우는 적격연금상품이 전부 생존연금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양로보험형 연금보험일때도 세제혜택이 가능한가?

답 변

양로보험형의 연금상품은 세제혜택이 안되며 순수한 생존연금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정기특약같은 보장성보험을 특약으로 부가하여 판매된다.

양로보험형의 연금상품은 생명보험료 공제로서 세제혜택이 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보험료 세제 우대제도의 취지로 보았을때 순수 생존연금보험같이 전적으로 노후 생활자금 준비를 하는 상품에만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상 秋元俊雄 部長 답변)

질문 34

세제에 관한 문제(종합과세 전망, 세제적격여부)

답 변

세제적격여부는 조감법 부칙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써 재무부령에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입법시행일 이후 올해까지 그 계약을 변경할 경우 세제적격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유사한 연금은 세제적격요건 즉, 가입대상, 최소납입기간, 연금개시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기존 보험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46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 현시점에서 가입할 경우에도 55세를 기준으로 볼 때 10년이 안 되므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金 基 洪 박사 답변)

질문 35

전통형 연금보험 상품과 관련된 금리리스크 문제, 예정이율을 7.5%를 사용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장기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도 금리리스크문제가 없는가, 앞으로의 금리 추세는 ?

답 변

당연히 금리리스크는 존재한다. 향후 금리 하락폭을 예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고정금리를 사용할 때 금리리스크는 당연히 발생한다.

금리리스크를 낮추려면 예정이율을 낮추면 되지만 본상품은 독점상품이 아니고 경쟁상품이므로 판매가능력, 경쟁력을 상품도입시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유지율이 주요요인(key factor)이 되고 있다. 유지율이 지금보다 대폭 향상이 된다면 금리리스크문제는 7.5%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유지율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배당생존사망율에서 개인연금사망율의 조기 도입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며 결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정금리를 보다 더 낮추고 현행 배당생존사망율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정금리를 7.5% 그 이상으로 고정한 가운데 개인연금사망율을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으나 결국, 향후 전망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그런 측면에서 시나리오 분석이 요망된다. 앞으로 다양한 금리체계를 염두에 두고 유지율을 변수로 준 가운데 보험사의 수지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상품도입 이전에 깊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전으로는 업계의 운용자산수익률이 87년에 16%, 작년 11.7%가 되어 여전히 10%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도 물가를 고려할 때에 1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6-7%로 보고 있고, 6%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용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년내에 실세금리가 10%이하로 하락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리스크 문제를 사망율상에서 보전하는 즉, 개인연금사망율을 조기 도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예정이율 7.5%의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금리리스크와 관련하여 자산운영의 효율화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내부적으로 구분경리를 확보하여 ALM과 같은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금리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내부적인 자산운영과 관련된 경영효율화가 요구된다. 물론 도입 이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에 부응하여 예정금리를 낮추어 판매하여야한다.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경제환경과 타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측면을 생각할 때 또 개인연금사망율을 조기에 사용한다고 볼 때 개인적으로 7.5%정도는 현시점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李 鳳 周 박사 답변)